

안전품질과 안전법규에 대한 이해



김상필
KSA QM · 신뢰성 수석전문위원

미국국방부의 MIL-STD-882D 문서에는 “안전이란 제품, 기기 혹은 재산의 손실” 혹은 환경파괴 혹은 “인명사상(사망 포함), 부상, 직업병 발생, 부상 등의 각종 원인과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품질이란 “고객요구 또는 명세서에 대한 일치”(W.E Deming, 1986), 그리고 “제품이 출하된 시점에서부터 성능 특성치의 변동과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회에 끼친 총 손실”(G. Taguchi, 1986)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품질이라는 용어는 소비자 중심의 개인적 충족을 가치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사항이다. 다시 말해 소비자의 개인적 충족과 만족의 가치를 목표로 한 계획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앞의 안전과 품질이라는 용어의 핵심적 공통사항을 근거로 하여 보편타당한 성격을 가진 안전품질이라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한국품질경영학회, 2010)

안전의 정의에서 보면 제품과 서비스로 제한하거나 아니면 환경적인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다. 품질은 대부분 제품과 서비스로 제한하고 있다. KS A 8402, ISO 8402 2.8에서도 보면 안전을 품질측면의 요소 중 하나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품질이라는 용어의 범위를 제품과 서비스 영역에 한정하여 설정한다. 그리고 제품

과 서비스가 소비자, 산업현장 및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안전품질에 포함된다.

안전품질이란

개발, 설계, 제조, 출하, 사용, 폐기 등의 수명주기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용자의 물리적, 정신적 만족감을 충족시키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총체적 특성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는 소중하게 다루어지고 보장되어야 한다.

인간의 삶은 소비자로서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존이라는 최소한의 필요로부터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소비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 모두가 소비자이기에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는 소중하게 다루어지고 보장되어야 한다.

소비자 주권이 강조됨에 따라 성장하고 있는 소비자 의식은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에도 한 차원 높은 잣대를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안전’이란 개념은 종래 생명·신체의 안전에 국한되었던데 반해 이제는 건강에 영향을 주는 비만·영양불균형·스트레

스 등에 대한 배려를 기업에 요구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였으며, 개인적인 안전문제를 넘어 대중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여가·문화 시설의 안전문제에도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의식변화는 소비패턴을 변화시키고, 기업의 생산 활동에까지 영향을 주어 국가경제활동을 주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제품안전기본법과 소비자기본법, 리콜 및 언론공표 조항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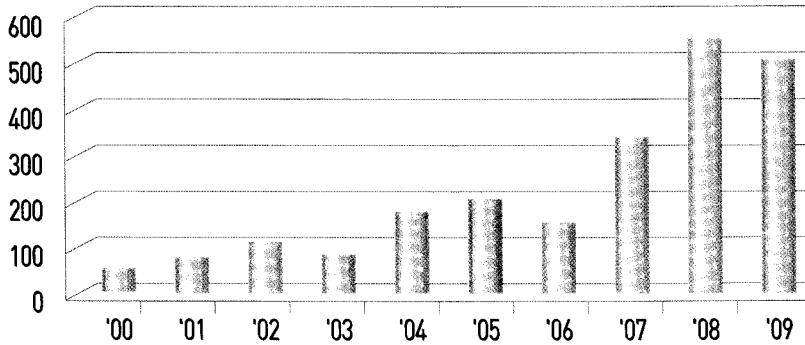
행정과 법률시스템은 이러한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소비자들의 안전과 향상된 주권의식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결함정보보고의무제, 리콜권고제, 긴급리콜명령제도와 제조물책임법이 도입되었고, 소비자의 권익과 안전을 강화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소비자기본법(2007.03 시행)이나, 제품결함으로 인한 위해성을 최소화 하려는 제품안전기본법(2011.02시행)에서는 소비자의 신체·재산에 위해를 입혔거나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 '안전성조사, 리콜(제품회수·수리·교환) 명령·권유, 리콜사실을 언론에 공표'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리콜이란 제도는 제품이 제조된 후에 불안정한 점(결함)이 발견되면 가능한 빨리 위해 위험의 원천(요인)을 제거하거나 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위해나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한다.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상품에 대하여 그 제품의 제조(수입), 유통, 판매업자에게 알리고 결함제품을 대상으로 적절한 시정조치(교환, 수리, 환불)를 취하는 소비자보호제도이다.

제품안전기본법(2011.02시행)에서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결함 시정제도와 정부의 강제적인 결함 시정 제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리콜은 결함제품에 대하여 리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부는 사업자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게 되며,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리콜을하기로 결정하면 사업자는 결함내용, 결함관련 주의사항, 시정방법 등을 우편,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알리고 시정계획서를 주무부장관(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강제 리콜은 제품이 리콜을 할 정도로 위해 한지? 여부를 제품의 결함과 관련한 동일 혹은 유사사고의 빈도, 위해의 심각성 및 시급성, 정밀 시험·검사결과,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며, 결함에 대한 위해성 평가는 리콜 결정의 핵심이기 때문에 기술표준원에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성조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야 한다.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기본법(2007.03시행)으로 제·개정을 이후에 소비자정책 기능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소비자 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도 일정한 규모의 임의단체를 구성해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와 함께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단체소송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을 공정거래위원회 산하로 이관하여 리콜 제도 강화 등의 조치를 정부의 부수정책이 아니라 독립적 소비자 보호정책으로의 전환하는 등 정부의 안전품질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의 품질경영체제는 개선되고 있지만 매년 리콜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안전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이 향상되고, 안전품질에 대한 사회적·행정적 체계가 강화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리콜건수



년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리콜건수	41	66	103	74	168	194	134	329	544	495

안전품질관련 제품규격 및 시험규격에 대해서 강제 규제

안전품질에 관련된 법규는 제품안전기본법, 소비자 기본법 외에 제품의 사용목적에 따라 특정제품의 안전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규격 및 시험규격을 강제로 규제하고 있는 안전법규가 있다. 하기의 도표상

에 설명하고 있는 안전법규에서도 제조자가 자기가 공급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이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해를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품목구분	식품	자동차	자동차배기가스 배출기관부품	안전인증 전기용품	안전인증 공산품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근거법	식품 위생법	자동차 관리법	대기환경 보전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요건	식품위생상 위해 발생또는 위해가능성있는경우	안전기준 부적합 또는안전 운행에지장을 주는 제작결함 발생 또는 발생우려	제작차배출가스 허용기준을위반한 경우	안전기준 부적합 또는 안전인증 표시기준의 위반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공산품
리콜유형	강제, 자발	강제, 자발	강제, 자발	강제	강제
리콜방법	회수, 폐기, 성분배합비율 등의 변경	제작결함의 시정	배출결함의 시정	개선, 파기, 수거, 교환, 환불, 수리	시정, 파기, 수거, 교환, 환불, 수리

안전품질이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

2009년 7월 1일부터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경부, 노동부, 환경부, 방송통신위, 소방방재청 등 5개 부처 13개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하나로 통합한 'KC마크'를 부착하였다. 공산품안전인증, 고압가스용기검정, 계량기 검정,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지식경제부 소관 8개 인증에 'KC마크'로 통일되었고, 2009년 1월1일부터 KC마크를 적용한 노동부 소관 '안전인증' 및 지식경제부 소관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2개 인증을 포함하면 10개 인증이 KC마크로 통합되었다. 정보통신기기인증, 물마크인증, 소방용품검정 등 3개 인증은 2011년부터 'KC마크'가 도입하면 5개 부처 13개의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하나로 통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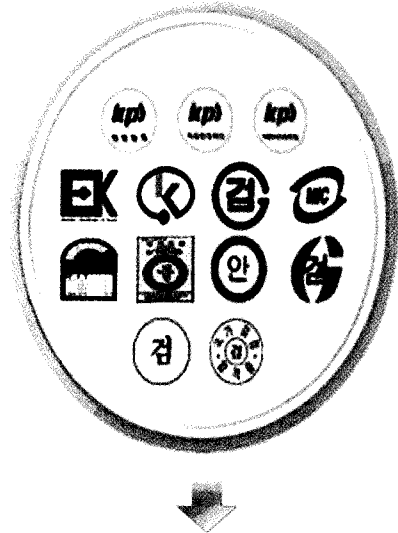
(Korea Certification) 마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법으로 정한 특정제품을 유통, 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제품에 표시되어야 하는 마크로, 안전·보건·환경·품질 등의 강제 인증 분야에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마크입니다.



다만, 2009년 7월1일 이후 신규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KC마크를 부착하여야 하나, 기존 인증 받은 제품의 경우에는 도입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2년간 'KC마크'와 기존 인증마크를 병행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2개 이상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과 관련하여 '복수 법정강제인증제품의 인증방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1개의 인증기관에 일괄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선진형 One-Stop Service 인증체제를 구축하고, 중복되는 시험?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상호 인정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소비자가 그 의미조차 알기 어려웠던 여러 종류의 인증마크 대신 'KC마크' 하나만 확인하고서도 '안전·보건·환경·품질' 관점에서 양질의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였고, 'KC마크'를 세계인에게 한국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각인시키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안전품질 인증브랜드로 육성할 목적으로 KC마크로 단일화한 것이다. 이것은 안전품질이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K와C를 하나로 연결하여 국제적 통합성을 강조하고, 워드타입을 심플형태로 형상화하여 인증마크로서의 속성 표현

추진일정

- 2009년 7월 1일부터 지식경제부 도입
- 2011년 1월 1일부터는 환경부, 방통위 등 8개 전부처로 확대 실시
- ※ 기본마크와 통합마크는 2년간 병행사용